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9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(75%)을 지원받아 구청장(25%)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없을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를 현행 민간위탁으로 유지함(안 제5조, 제7조).
-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시 재정지원은 불필요함(안 제7조제2항 삭제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”을 “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운영할”로 한다.

안 제5조 중 “위탁 및 지원할”을 “위탁할”로 한다.

안 제6조 중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 중 “위탁 및 지원과”를 “위탁과”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서울특별시</u> <u>공항소음대책지역</u> <u>주민지원에 관한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</u> <u>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</u> <u>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</u> <u>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</u> <u>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"소음대책지역"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----- -----.</p>	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3. "소음대책 인근지역"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</p>	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3. "주민지원사업"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.

4. -----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

----- 제4호 -----
-----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-----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-----
-----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

3. (개정안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

<p>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<u>위탁</u> 할 수 있다.</p>	<p><u>지역 주민지원센터</u>를 설치· <u>운영</u>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----- ----- <u>위탁</u> 및 지원할 -----.</p>	<p><u>인근지역</u>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<u>운영</u>할 -----.</p> <p>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----- ----- <u>위탁</u>할 -----.</p>
<p>제6조(주민지원사업비 지원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6조(주민지원사업비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 <u>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</u> <u>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</u> <u>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</u> <u>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주민지원사업비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준용규정) 주민지원 사업의 <u>위탁</u>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준용규정) ----- --- <u>위탁</u> 및 지원과 ----- ----- --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 -----.</p>	<p>제7조(준용규정)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”을 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소음대책지역”을 “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”으로, “4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3. “소음대책 인근지역”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소음대책지역”을 “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음대책지역”을 “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”을 “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운영할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위탁 할”을 “위탁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공향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소음대책지역"이란 공향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3. "주민지원사업"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공향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-----.</p> <p>3. "소음대책 인근지역"이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.</p> <p>4. -----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 ----- ----- 제4호-----.</p>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향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----- 소음대책지역
및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----- 소음대책
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소음
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
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운영할 -----.

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-----

위탁할 -----.